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생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안내 의무화 등〉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1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승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29.
3. 회 부 일 : 2025.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생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학생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투표시간 청구 가능 안내사실을 학생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며, 학교의 장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6조의4(학생의 투표시간 보장)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생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2. ~ 5. (생략) ④ ~ ⑫ (생략)	③ ----- ----- -----. 1.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6조의4제2항-----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	---

현행법¹⁾은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된 「공직선거법」(2014.2.13. 공포·시행)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

1)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에 필요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법 제6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261조제3항제1호).

한편, 이후 법률 개정(2020.1.14. 공포·시행)을 통해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학생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재·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 선거에 비해 학생의 투표시간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가능성이 높고,²⁾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³⁾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현행법 제6조의2⁴⁾에 준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청구가 있는 경우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

2) 18세 선거인의 재·보궐선거 투표율 현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는 별도로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음.

3) 개정안의 제안이유

4)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학생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업무시간 중 투표시간을 자율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률로 투표시간 보장을 위한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높은 반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으로서의 신분일 뿐, 근로계약 등 일정한 법적 구속이나 계약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의 장에게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임. 재·보궐선거는 4월 또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⁵⁾되며,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5)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운영⁶⁾되므로, 선거권을 가진 학생이 선거일 당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사전투표 기간 중 주말을 이용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15조제1항⁷⁾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국민⁸⁾으로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법률 적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개정안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만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선거권이 없는 학생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6) **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8) 다만, 예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선거권을 보유할 수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학생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투표권 보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학생의 실질적인 투표참여를 보장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전투표일에도 투표가 가능하므로, 사전투표 및 선거일 모두 보장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